

## 부 산 가 정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드단21638 이혼 등  
원 고 탁AA ( -2 )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김BB ( -1 )  
부산  
사 건 본 인 1. 김CC ( -2 )  
2. 김DD( -3 )  
사건본인들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 론 종 결 2015. 5. 26.  
판 결 선 고 2015. 6. 9.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5. 6. 10.부터 2017. 2. 4.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2. 5. 20.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2,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 3,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17. 2. 4.까지는 월 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2. 5. 20.까지는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 유

###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피고는 1996. 2. 27.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사건본인들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

2)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원고와 지인들에게 원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는 2007. 4. 17.경부터 2009. 10. 27.경까지와 2013년경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4) 피고는 2013. 8. 15. 원고가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74통이나 전화를 하였다.

5) 피고는 2013. 8. 20. 원고가 성매매를 한다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오인 신고로 처리되었다.

6)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의처증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파탄 책임의 정도, 피고의 건강 상태 및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인정 사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96년경 피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임차보증금 13,000,000원의 주택을 임차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혼인 직후부터 1998년경까지 울산에 있는 중국 집에서 근무하고 2001년경에는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한 사실, 원고는 2001년 9월경 아버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약 20,000,000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9년 9월경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7월경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7. 5. 21.경 피고의 명의로 최EE으로부터 부산 \*\*\* \*\* \*\* \*\* 건물 중 일부(방 2칸)를 임차보증금 21,000,000원에 임차한 사실, 피고가 현재 위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대체로 원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담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는 점, 원고와 피고의 실질 혼인지속기간,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연령·건강상태·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임차보증금 채권 21,000,000원이 있을 뿐이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명의로 취득 경위, 원고의 의사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임차보증금 채권은 현재의 명

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되,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 될 재산의 금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동재산을 분할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21,000,000원×0.5)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양육 상황, 원고의 양육의지, 피고의 건강 상태,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6. 10.부터 사건본인 김CC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17. 2. 4.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김DD이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2. 5. 20.까지는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곤